

# KIEP 한중경제 포럼

## KIEP Korea-China Economic Forum

제04-08 / 2004년 9월 30일

### 민영경제 용자 지원의 강화에 대한 분석<sup>1)</sup>

중국사회과학원 민영경제연구중심 劉迎秋 주임

현재 중국 민영기업은 여전히 용자난(融資難)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는 중국공산당의 “16대”와 “16기 3中全會”에서 명확하게 제시한 “비공유경제 발전을 제한하는 법률·법규와 정책을 정리, 수정하여 체제적인 장애를 제거”해야 하며 “비공유제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조건을 갖춘 기업의 실력 제고와 규모 확대를 장려”한다는 요구와 맞지 않은 것임. 얼마 전 발생한 민영기업가 孫大午가 “일반인의 예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한다(非法吸收公衆存款)”는 죄명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받은 안건<sup>2)</sup>은 하나의 측면에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함. 표면적으로 보면 孫大午안건은 “불법적으로 공중 예금을 흡수”하는 문제이지만 실제로 어떻게 기업의 정당한 민간 용자와 불법적인 민간 용자를 구분하고 민영기업을 정확한 민간용자의 길로 인도하여 중국 국민경제의 안정한 고속발전을 촉진하는가 하는 문제임. 본 보고서는 관련 문헌을 참조하고 각지 민영기업의 민간용자 현황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며 특히 河北省 徐水縣 大午農牧集團에 대한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 I. 중국의 민영기업 발전은 여전히 용자난의 문제에 직면

- 1) 본 보고서는 KIEP 북경사무소의 의뢰로 중국민영기업의 대표적 연구자인 劉迎秋 주임(중국 사회과학원 민영경제연구중심)이 작성한 <大力發展民營經濟的融資支持分析>을 번역한 것임.
- 2) 2003년 10월 30일 徐水縣 인민법원은 “불법적으로 일반인들의 예금을 모집한다”는 죄명으로 河北大午農牧集團有限公司에 벌금 30만 위안, 해당 회사 회장인 孫大午에게 징역 3년, 집행 유예 4년, 벌금 10만 위안으로 판결하였음.

첫째, 절대다수 중소기업은 아직 은행대출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예를 들어 7개 도시상업은행과 4대 국유상업은행의 일부 지점에 대한 조사결과(<표 1> 참조)를 보면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대출신청에 대한 은행의 거절 비율이 높고, 민영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상업은행에 대한 대출신청에서 거절당하는 비율은 대기업의 2~3배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북경소재 중소기업의 은행대출에 관한 또 다른 조사 결과를 볼 때 마찬가지로 상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획득한 기업의 비율이 조사대상기업 전체의 5%밖에 불과함. 江蘇省 武進縣 개인·사영기업에 대한 농업부의 조사결과를 보면 은행에서 대출을 취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기업은 연간소득 500만 위안 이상인 민영기업 중에서는 45.1%이지만 연간소득 500만 위안 이하인 민영기업 중에서 86.5%에 달하고 있음.<sup>3)</sup> 왜냐하면 대부분 민영기업은 경영규모가 비교적 작고 조직구조가 간단하며 경영하는 품종이 단일하고 시장 위험을 저항하는 능력이 비교적 낮으며 생존과 발전의 전망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임. 또한 고이윤이 보장되는 독점적인 업종에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저당신용 능력과 경영 신용능력을 갖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임.

<표 1> 대출신청에 대한 상업은행의 거절 비율 (기업규모별)

기업규모 (인수)	신청기업 수	신청 건수	거절 당한 기업수	거절 비율 (%)	거절 건수	거절 건수의 비율(%)
≤50	736	1,537	478	64.95	1,213	78.92
51~100	360	648	203	56.39	375	57.87
101~500	159	507	65	40.88	224	44.18
>500	46	152	12	26.09	37	24.34
합계	1,301	2,844	758	58.26	1,849	65.01

자료: 李揚, 楊思群, <중소기업 용자와 은행>, 상해재경대학출판사, 2001년, p.80.

둘째, 민영 중소기업에게 직접용자의 통로와 수단은 여전히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음. 선진 시장경제국가에서 기업의 직접용자의 주요 경로는 주식상장, 기업채권 발행, 벤처투자 및 주식장외거래 등이 포함됨.<sup>4)</sup> 그런데 중국에서 직접용자,

3) 何夢筆(독일), 馮興元, 何廣文: <중국 농촌 금융조직구조의 다원화에 대한 試論>, <중국경제시보>, 2002년 8월 12일.

4) 미국경제학자 Modigliani와 M. Miller가 창립한 MM이론은 용자방식 구성의 의미 및 용자구조에서

특히 주식발행은 여전히 국유기업과 대형기업에 치중되는 경향이 현저하며 중소기업의 진입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중소기업 용자의 주요 경로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음.

2002년 4월 말 기준으로 중국 심천과 상해 두 시장에 상장한 1,171개 기업 중에서 비록 민영기업이 9%를 차지하고 있어 1990년대에 비해 훨씬 많아졌지만 대부분의 민영기업은 실제로 “상장기업 인수(買殼)”를 통해 주식시장에 진입한 것임. 중국의 <公司法>에서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의 주식자본 총액을 5,000만 위안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당한 정도로 민영 중소기업의 주식발행에 의한 직접용자는 제한받고 있음. 채권발행에 대해서도 실제로 아직까지는 민영기업에게 개방되지 않은 분야라고 볼 수 있음. 주식시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업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주식유한회사의 순자산액이 3,000만 위안 인민폐 이상이어야 하고 유한책임회사의 순자산액이 6,0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민영 중소기업이 이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셋째, 내부용자는 시장발전과 기업 확장의 이중적인 도전에 부딪치게 됨. <표 2>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중국 민영 중소기업은 대부분 내부용자에 주로 의존하고 있음. 기업 설립자의 보유 자금, 가족 및 친족의 자금은 기업 설립 초기의 주요 자금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기업 확장을 가능케 하는 주요 자금원임. 비록 일부 소수의 민영기업은 외부용자에 접근할 수 있지만,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생존기간이 비교적 길고(10년 이상) 이미 상당한 규모로 성장한 기업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통계에 의하면 이러한 기업들도 외부용자를 통해 획득한 자금은 대략 20% 수준에 불과했음. 민영 중소기업의 내부용자에 의존도가 높은 것은 중국의 경제체제 전환과정의 실상으로서 전환기 중국에서 경제주체의 신용도가 떨어지고 신용부재 현상이 심각하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임.

---

부채의 가치를 제시하였음. 그러나 해당 이론의 고도 추상성과 특정한 조건에 대한 假定으로 인해 실제적인 응용범위는 그다지 크지 않음. 후에 다른 연구자들의 해당 이론에 대한 발전, 특히 權衡理論(equilibrium theory), 인센티브이론(激勵理論) 및 정보의 비대칭이론의 보충을 거친 후 실제상황에 진일보 접근하게 되었음. 경제학자는 정보의 비대칭 이론을 용자구조 이론 연구에 사용한 후 하나의 결론을 내렸는데 이것은 기업의 시장가치와 채무 비율은 正相關 관계가 있는데 채권발행은 고품질의 적극적인 시장 신호이고 주식발행은 투자가의 환심을 살 수 없는 소극적인 시장신호임. 왜냐하면 주식발행의 소식이 알려지면 기업의 기존 주식의 시장가치는 하락할 것이기 때문임. 따라서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기업은 우선순위에 의해 용자구조를 따라야 하는데, 내부 자금모집→채권발행→주식발행의 순서라 할 수 있음. 이러한 우선순위 이론은 마침 1965년~1982년 미국기업의 용자구조에 대한 실례로 입증되었음. 해당 시기 미국 기업의 자금공급 총액에서 내부자금은 61%, 채권 발행은 23%, 주식 발행은 2.7%임. 비록 중국의 실정은 미국과 다르지만 기업 용자구조의 배분 및 그 순서도 이같은 형태가 되어야 할 것임.

그런데 이러한 기업들이 진일보 발전하려면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이중적 도전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우선 시장발전에 따라 필연적으로 경쟁이 더 한층 격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기업은 경쟁력을 높이고, 둘째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용자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는데 특히 외부에서 더욱 많은 자금을 조달해야 할 것임. 그러나 실제로 외부용자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이상과 같이 민영기업이 내부용자를 적극 확대해 가면서 동시에 외부용자를 적극 취득할 수 있는가 여부가 사실상 민영경제부문의 향후 발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임.

**<표 2> 민영기업 생존기간과 기업 용자구조와의 관계**

용자방식 경영 기간	자기 용자	은행 대출	비금융기관	기타 경로
3년 이하	92.4	2.7	2.2	2.7
3년~5년	92.1	3.5	0.0	4.4
6년~10년	89.0	6.3	1.5	3.2
10년 이상	83.1	5.7	9.9	1.3
총계	90.5	4.0	2.6	2.9

자료: Neil Gregory, Stoyan Tenev, and Dileep M Wagle, 2000, China's Emerging Private Enterprises: Prospects for the New Century (Washington: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格雷戈里, 塔涅夫: <중국 민영기업의 용자 문제>, <경제사회체제 비교>, 2001년 6월호.

## II. 민영기업 용자난의 주요 원인

첫째, 신용수급 구조를 살펴보면 은행자금이 대기업에게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음. 중국공산당 “16대” 이전에는 상업은행이 대출을 꺼리는 현상이 보편적이어서 약 6년 동안 은행예금이 대출을 초과하는 상황(貸差)이 지속되었음. 이것은 기업자금의 부족을 초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은행자금을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함.

중국공산당 16기 당대회 이후 이러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상업은행이 금융업종의 전문기업으로서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것을 의미함. 은행체제의 끊임없는 개혁심화와 은행대출의 위험관리 책임제를 실시함에 따라 은행은 경영 위험 및 원가를 최대한으로 낮추고, 수익을 끊임없이 제고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

화하였음.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은행이 경영위험과 원가를 축소하고 은행의 수익을 제고하는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는 바로 신용대출자금을 대·중형 기업에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임. 이것은 국유상업은행이든 비국유상업은행이든 상관없이 종전의 상황하에서는 상업은행의 필연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임. 따라서 은행의 신용대출자금은 계속 대·중형 기업, 특히 대기업으로 집중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신용대출 지원이 절실한 대다수의 중소기업, 특히 중소기업 민영기업은 소규모 경영규모, 불안정한 신용상태 및 저당능력의 미비 등의 요인에 의해 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음.

둘째, 기존의 합작금융의 위험통제 메커니즘은 여전히 신용대출자금을 민영 중소기업에 투입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론상 분산적으로 존재하는 각종 합작금융은 중소기업 경제단위의 용자 수요에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음. 그런데 중국에서는 전통적인 계획경제체제의 제약으로 사실상 진정한 합작금융 체제를 아직까지 구축하지 못하고 있음.<sup>5)</sup>

종전의 수많은 도시신용합작사는 지난 수년간의 “개조, 채무축소, 합병, 전환”(改、降、并、轉)을 통해서 대부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 소유의 도시상업은행으로 전환되어, 전형적인 의미의 도시합작금융은 이미 기본적으로는 모두 시장에서 퇴출되었음. 그러나 광활한 농촌지역의 신용합작사는 수차례의 개혁을 거쳤지만 아직까지도 규범화된 발전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 중국정부는 농촌신용사에 1,500억 위안을 투입하여 3년에 걸쳐 기존의 불량자산을 줄이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농촌경제의 발전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소형상업은행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임. 왜냐하면 농촌신용사는 이중적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임. 즉 농촌경제 발전을 위해서 금융지원을 제공해야 하면서 동시에 최대한의 수익을 추구해야 함.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적절한 대안을 찾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며, 비교적 심각한 도덕적 위험과 과도한 행정적 간섭이 나타나는 문제점은 여전히 피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처럼 경영관리인력의 부족, 불량자산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 결여 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농촌신용사들로 하여금 비공유

5)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합작금융사 7원칙”은 △자원과 개방 원칙 △민주관리, 1인1표 원칙 △비수익과 사원참여 원칙 △자주와 무채무의 원칙 △교육, 훈련과 정보 원칙 △합작사들 간의 협력 원칙 △사회성 원칙임(史紀良, <미국 신용합작 관리>, 중국금융출판사, 2000). 합작금융의 기본적인 특징은 自願性, 서로 돕고 구제하는 성격(互助共濟性), 민주관리성, 비수익성임(謝平, <중국 농촌신용합작사 체제개혁에 관한 논쟁>, <금융연구>2001년 1월호).

제경제, 특히 광대한 농촌의 민영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여전히 현실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셋째, 민영기업의 사금융 의존도는 높지만 사금융의 합법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사금융의 정상적인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일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중국의 중소기업 중에서 사금융 또는 내부적인 자금모집 경험이 있는 기업은 조사대상기업 190개 중에서 176개로서 9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 중에서 95개는 직접 친척의 돈을 빌린 것이고 81개는 기업 내부에서 자금을 모집하였고, 41개는 개인에게 돈을 빌린 것이고, 또한 11개는 은행 대신에 사금융 전문업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임.

잘 알려진 바와 같이 溫州에서는 사금융이 성행하고 있으며, 그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법정 대출이자율의 2배~3배 수준으로 알려져 있음. 이에 맞추어 溫州에서는 어음시장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데, 蒼南龍港鎮에서만 1개월에 약 5,000만 위안 규모의 환어음이 민간부문에서 태환되고 유통되고 있음.<sup>6)</sup>

민영기업이 사금융에 의존하는 이유는 높은 용자비용을 부담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얻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임. 유명한 민영기업의 하나인 河北大午農牧集團有限公司는 비록 2003년에 고정자산과 생산액이 모두 1억 위안을 초과했지만 1985년에 養鷄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은행에서 단지 두 번 대출을 받았을 뿐임. 한 번은 1995년에 大午集團이 국가공상총국에 의해 전국 최대 500개 사영기업 중의 하나로 뽑힌 다음에 하북농업은행으로부터 250만 위안의 대출을 받았으며, 다른 한 번은 1996년에 회사 孫大午 회장이 하북성에 의해 省的 養鷄壯元으로 뽑혔을 때 다시 농업은행에서 180만 위안의 대출을 받았음. 이를 제외하면 지난 20년 동안 大午集團이 수차례로 은행에 대출 신청을 제출했지만 모두 거절을 당했음. 이처럼 은행에서 직접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 하에서 大午集團은 기업 내부의 축적과 기업직원 및 기업주변의 일반인으로부터 예금을 모집하게 되었음.

조사결과에 의하면 비록 大午集團의 연도별 사금융 활용규모는 상이하지만 이러한 용자방식은 효과적으로 기업발전에 기여하였음. 고정자산 규모가 4,000만 위안을 초과하고 실제로 3,000여 명의 학생을 모집한 大午중학교도 사실 이러한 용자방식을 통해 설립된 것임. 大午集團의 발전은 현지 농민에게 이익을 가져왔

6) <강소, 절강 중소기업 용자와 금융기관 발전에 대한 조사보고서(江,浙中小企業融資與金融機構發展調查報告)>, <경제연구참고>, 2002년 12월 16일.

을 뿐만 아니라 현지 농촌경제의 발전을 견인하고 현지의 재정상황을 개선하였음.

비록 大午集團에서 기업직원 및 현지 일반인의 예금을 모집할 때, 이자율은 3.6%(당시 은행이자율보다 1.62% 포인트 높았음)에 불과하였지만 예금 모집행위가 은행감독관리부문의 기준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徐水縣人民檢察院은 2003년 9월 30일에 大午集團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음. 후에 徐水縣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2003년 10월 30일에 판결을 내렸음. 大午集團이 “2000년 1월~2003년 5월 간 같은 시기 은행 예금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 그리고 금리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방식으로 “차관증명서(借款凭證)” 또는 “차용증서(借據)”의 명이지만 실제로 예금증서인 制式 증서를 작성, 발행하여 사회 공중으로부터 변한 형태로 예금 1,627건, 총 1,308만 3,161위안을 흡수하고 611명과 관계”되었는데 <중화인민공화국 刑法> 제176조와 제72조의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大午集團에 30만 위안의 벌금, 해당 회사 전임 회장인 孫大午에게 “징역 3년, 집행 유예 4년, 벌금 10만 위안”의 판결을 내렸음.

따라서 실제적인 결과를 보면 개인과 기업에게 도움이 되고 해당지역 경제발전에도 기여하였지만 사금융 행위는 법적으로는 “범죄”행위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은행의 융자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정부는 시장발전의 내면적인 규율과 요구에 맞는 건전한 사금융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지금까지는 부문별로 상이한 규정과 관리방법이 있는 등 명확하지 않음. 예를 들면 1984년 <민사정책법률의 관철과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最高人民法院關於貫徹執行民事政策法律若干問題的意見)> 제69조 및 1991년 <인민법원의 貸借안건 심리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의견(最高人民法院關於人民法院審理借貸案件的若干意見)>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금융 여수신 금리는 국가은행의 여신금리보다 적당한 수준으로 높을 수 있고 구체적인 기준에 있어서 각지 인민법원이 현지 실정에 근거해서 파악할 수 있음. 단, 은행의 동종 여신금리의 4배 이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어떠한 범위의 사금융이 합법적이고 아니면 불법적인지에 대해서 최고인민법원은 명확한 규정을 내리지 않고 있음. 다만 국무원이 1998년에 공포한 <불법 금융기관과 불법 금융업무 활동 단속 방법>에서는 불법 금융업무 활동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근거로 이러한 활동이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받았는지 여부로 명확하게 규정했음. 따라서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받은 것은 모두 합법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불법 자금유에 해당함. 이는 중국인민은행이 언제나 정확하게 “비준” 판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상황에 부합하지 않아서 시장경제 발전의 요구와 상충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넷째, 정부부문의 감독관리가 적절하지 않은 것도 민영기업 융자난을 조성하는 중요한 요인임. 중앙정부는 비공유제경제의 장려, 지원, 인도 및 발전을 거듭 요구하며 민영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성장을 강조하여 왔음. 溫家寶 총리가 2004년 전인대 제10기 제2차 회의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요구를 재차 강조한 바 있음.

그러나 실제 집행과정에서 정부부문의 감독관리가 적절하지 않은 문제가 다수 존재함. 지대설정(rent-setting)과 지대추구(rent-seeking) 현상을 비롯하여 일부 부문의 이익 추구 현상도 흔히 나타나고 있음. 부문의 이익 추구, 행정적 부패, 지대설정, 지대추구 현상은 정부의 감독관리가 적절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임. 행정적인 감독관리 과정에서의 단일화(一刀切) 현상과 부적절한 감독관리의 문제는 민영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에 장애가 되고 민영기업의 융자난을 조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III. 민영기업, 특히 민영 중소기업의 융자난 해결을 위한 몇 가지 건의

첫째, 현행 금융체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특정 커뮤니티형(社區性) 주식제 중소은행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함. 국유상업은행에 대한 주식제 개조와 함께 시장경제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신용대출 메커니즘의 건설과 결합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여기서 말하는 신형 신용대출 메커니즘은 중소기업, 특히 민영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기능 부문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용대출 심사 절차의 구축, 대출권한의 하급기관으로의 분산, 중소기업 대출금리 변동폭의 완화, 신용대출 위험 관리 강화 및 신용대출의 효율성 제고 등을 포함한 것임. 신형 신용대출 메커니즘 개혁의 핵심은 각종 금융기업들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 업무를 적극 전개하도록 동원하여 민영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는 것임.

또한 정부는 농촌신용사의 개조를 통해서 특정 커뮤니티형 주식제 중소은행으로 적극 발전시키고, 도농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제 중소은행을 전면적으로 설립하여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지원해야 할 것임. 동시에 기존의 농촌 郵政儲蓄을 커뮤니티형 주식제 중소은행의 개혁에 포함시켜 커뮤니티형 주식제 중소은행의 신용공급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하고 동시에 비공유제경제 발전에 대한 농촌금융의 지원기능을 진일보 강화해야 함. 浙江臺州市商業銀行은 이 방면에 있어서의 성공적인 선례임. 해당 은행은 2002년 3월에 원래의 도시신용사를 개조한 주식제 중소은행으로서 지방재정의 출자가 5%에 불과하고, 대출총액의 98.3%를 민영기업에 공급하였으며, 불량대출 비율이 불과 4.8% 미만임.<sup>7)</sup>

둘째, 민영 중소기업의 저당과 신용담보 체계를 최대한 빨리 구축하고 완비해야 함.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당과 신용담보 능력의 결핍으로 민영 중소기업이 상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요한 원인임. 따라서 민영기업의 저당과 신용담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현단계에서 중국 민영 중소기업의 대출난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하나의 중요한 관건임.

한편, 중국의 민영기업의 저당능력이 결핍되는 것은 기업규모가 대부분 작다는 것과 관련이 있으면서 지방정부의 민영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력하지 않고 이에 따라 기업이 당연히 보유해야 하는 저당권이 심각하게 부재인 것과 관련이 있음.<sup>8)</sup>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업의 발전도 심각하게 지체되어 있음. 현재까지 중국의 담보업은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한데, 대략 850 개의 각종 담보회사의 담보용 자금총액은 242억 위안으로서 회사당 평균 담보자금액이 2,800만 위안에 불과함.<sup>9)</sup>

뿐만 아니라 중국의 신용평가체계는 더욱 심각하게 낙후되어 있는데 기업 신용에 대한 권위적인 평가가 미비하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있는 기업도 정상적인 신용대출을 받지 못함. 따라서 현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저당대출 관리방법과 담보정책 및 법규를 정리하고 수정하여야 할 것임. 또한 주식제 및 민영 담보회사

7) <시장경제가 비공유제 기업의 파트너 은행을 부른다(市場經濟呼喚非公企業的伙伴銀行)>, <금융시보> 2003년8월7일.

8) 필자는 2002년 5월 광둥 주강삼각주지역에서 조사를 수행한 적이 있는데,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2년 5월까지 이러한 상황에 있는 비공유기업의 고정자산 총액이 공장건물을 비롯하여 약 300억 위안에 달하고 있음.(劉迎秋, <비공유제 기업의 융자난 해결에 대한 견해>, <중국사회과학원 要報·信息專報> 2002년 제57호 참조)

9) 夏斌, <융자 제도를 전방위 혁신, 중소기업 발전을 촉진>, <중국경제시보> 2003년6월2일.

의 발전을 권장하고 기업 저당과 신용 담보 체계를 구축·완비하고 은행체계를 주체로 하는 신용평가 체계를 최대한 빨리 완비하여 중소기업, 특히 민영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효과적인 저당과 신용담보 지원을 제공해야 함.

셋째, 금융리스 업무를 크게 발전시켜 리스 메커니즘의 용자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할 것임. 금융리스는 임대인(리스회사)이 임차인(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차인이 동의한 조건에 따라 임차인이 지정하는 기계설비를 구매하고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해당 기계설비의 점유, 사용과 수익권을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가리킴. 이는 신용대출, 무역, 임대를 하나로 집중하고 임대 대상물의 소유권과 사용권의 상호 분리를 특징으로 하는 신형 용자방식임. 이러한 용자방식은 특히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지만 관련 기계설비를 급히 구입해야 하는 중소기업에 적합함.

중소기업, 특히 민영 중소기업은 대부분 소규모, 경영의 분산, 저당과 신용대출능력의 취약성 등으로 상업은행으로부터 대규모의 대출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러한 상황 하에서 상업은행은 직접 리스회사에 대출을 제공하고 리스회사는 다시 금융리스의 방식을 통해 기업이 급히 필요한 자금을 기업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음. 이것은 은행의 신용대출상 리스크 조절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성장과정에서 설비수요에 대한 신용지원 문제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등기자본이 약 5억 위안인 浙江省租賃有限公司는 리스업무를 통해 연속적으로 1,800 여 개의 중소기업에게 용자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누적 용자규모가 100억 위안을 초과했고 수익과 세금이 1,000만 위안 이상인 100여 개의 민영기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하였음.<sup>10)</sup>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금융리스의 발전은 중소기업, 특히 민영 중소기업의 용자난을 해결하고 민영 중소기업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성공적인 방법이라는 것임.

넷째, 전당업을 적극 발전하여 전당포의 용자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함. 전당업 오래된 민간금융업무와 용자방식의 한 종류였음. 다른 용자방식에 비해 전당업은 실물저당을 받음으로써 담보물이 더욱 탄성 있으며 자금 회전이 더욱 빠르고 현저한 신용위험이 없는 등 특징이 있음. 전통적인 전당업은 주로 금은보석,

10) <강소, 절강 중소기업 용자와 금융기관 발전에 대한 조사보고서(江,浙中小企業融資與金融機構發展調查報告)>, <경제연구참고>, 2002년 12월 16일 참조.

의류를 비롯한 생활용품을 취급하여 실물과 현금의 과잉, 부족을 조정하는 것임. 최근 전당업은 이미 전통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나 주로 기업, 특히 중소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음.

전당업무를 통해 기업의 용자목적에 달성하게 하는 것은 최근 전당업 발전의 기본적인 목표의 하나임.<sup>11)</sup> 중국에서도 이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발전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그런데 전당을 통한 용자는 이자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비용(보관료, 보험료, 거래비용 등)이 소요되기 때문에 용자비용이 비교적 높다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전당업을 어떻게 중소기업, 특히 민영기업의 용자지원에 활용할지 향후 연구가 필요할 것임.

다섯째, 사금융을 합리적으로 규범화하고 적극 인도하여 민영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크게 촉진해야 할 것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국적인 상업은행(국유제 및 주식제 상업은행을 모두 포함)은 낮은 원가로 대형 금융업무를 전개하는 요구가 있고, 지역적인 주식제 중소은행은 아직 탐색과 초기발전단계에 있고 신용담보, 리스 및 전당업 등 각종 금융업 역시 여전히 초기발전단계에 있음.

따라서 민영기업이 현상황하에서 사금융에 의존하는 것은 외적환경과 내부발전의 요구에 더욱 적합하기 때문에<sup>12)</sup> 현명하고 객관적이며 경제규율에 부합한 선택은 단순히 규범을 강조하지 말고 적극적인 인도, 안정한 발전과 효과적인 이용의 방면을 특별히 강조해야 함. 이를 위해 관련 정책, 법규에 대한 필수적인 수정과 조정이 필요한데 특히 특정대상(기업직원 및 관련 주민), 특정용도(기업의 생산과 유통)의 경우 사금융에 합법성을 인정하고 정부에서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며 엄격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고 명확히 규정한다면, 민영경제발전에 대한 지원과 사금융 위험 해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여섯째, 자본시장의 다원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민영기업의 용자 공간을 확대하여야 할 것임.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투자기금 설립, 제2증시 건립, 장외거래시장의 시범 운영, 규모 및 질적 조건에 부합한 기업의 거래소시장 상장 등은 중국에

11) 2001년까지 중국의 950개 전당포는 그 해 전당 대출 총액이 300억 위안, 전당 잔액은 31억 9,000만 위안, 한 해의 수익은 7,000만 위안임. (<중소기업: 또 어떠한 용자 방법이 있는가?(中小企業: 還有哪些融資路?)>, <中華工商時報> 2003년 4월 22일 참조)

12) 국제적 경험을 보면 지난 40년 동안 다수 국가들이 정규적인 금융제도의 도입을 통해 민간에 저렴한 신용대출을 제공하려고 노력했지만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세계은행의 연구를 보면 정식 금융기관은 非法人부문의 수요를 충분히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았으며, 그들의 금융수요는 정식 금융기관에게는 너무 규모가 소형일 수 있음. 따라서 다수 대출 또는 한 건의 예금을 취급하는 비용과 거래액의 대소와는 상관관계가 없음.(세계은행: <1989 세계은행 발전 보고서: 금융 체계와 발전>, 중국재정경제출판사, 북경, 1990)

서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민영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임. 이 방면에서 중국학자들의 토론은 충분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연하지 않을 것임.<sup>13)</sup> 다만 본 보고서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업의 외부용자, 특히 민영기업의 외부용자를 異分子 행위로 간주하지 말고 중국 기본경제제도 건설의 중요한 구성부분과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의 중요한 경제적 기초의 높이로 인식하여 이 방면의 일을 확실하게 잘 해야 함.(\*\*\*)

---

13) <중소기업 용자의 돌파구 찾기 - 중국사회과학원 “다차원 자본시장 연구” 과제팀의 핵심 연구원인 王宜四박사와의 인터뷰(中小企業融資尋找突破口-訪中國社科院“多層次資本市場研究”課題組主要成員王宜四博士)>, <중화공상시보> 2003년 11월 14일 참조.